[별지 2-①호]

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

- □ 과 제 명 : 플라즈마 활성종 공급장치 국산화 개발
- □ 총 개발기간 : 2016년 12월 9일부터 ~ 2018 년 12월 8일까지(24 개월)
- □ 계약당사자

수 요 처의 장 : (기관명) ㈜원익아이피에스 (대표자) (이하 "수요처"라 한다) 주관기관의 장 : (기업명) ㈜인투코어테크놀로지 (대표자) 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 다)

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수요처와 주 관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기술개발의 목표)

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계획서(이하 "사업계획서"라 한다)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하다.

제2조 (기술개발의 수행)

주관기관은 수요처와 협력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 (개발사업비 지급)

- (1) 수요처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2018년 12월 8일 까지 수요처 민간부담금 77,000천원 (현금: 0천원, 현물: 77,000천원)을 지급하여야 한다. 이때 수요처 민간부담현금은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- (2) 수요처가 주관기관에게 출자하는 현물은 개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관기관이 희망하는 시기에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.
- (3) 주관기관은 수요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요처 민간부담금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(이하 "요령"이라 한다) 제21조(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)의 규정에 따라 사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 (개발 결과의 보고)

주관기관은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경과 및 개발결과 등에





대해 수요처의 확인을 거친 후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 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)

- (1) (신의성실) 수요처와 주관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.
- (2) (상호협조) 주관기관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수요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수요처와 협의하여야 하며, 수요처 또한 필요한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

본 계약은 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(이하 "지침"이라 한다)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수요처와 주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요처와 주관기관은 변경 및 해지하기 전에 기술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7조 (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)

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, 시제품, 연구시설·장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, 주관기관이 요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완납한 시점에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사업비 부담비율 범위내에서 수요처와 주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과물의 소유권 및 실시권 허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수 있다.

제8조 (개발사업비 잔액처리)

기술개발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개발사업비 잔액이 발생되거나, 본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단이 되어 개발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수요처의 현금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 (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)

- (1) 수요처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제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기술개 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다수요처 과제의 경우, 수요처는 주관기관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하여 타 수요처와 공동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3)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주관기관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수요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첫 구매계약이 발생하여 첫 납품이 완료된 시점부터 3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. 다만, 구매와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.

제10조 (관계법령의 준수)

수요처와 주관기관은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계 법 령 및 규정,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.

제11조 (비밀유지)

수요처와 주관기관은 상호 동의 없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은 당사자간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제13조 (해석)

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주관기 관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수요처와 주관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 다수요처 과제의 경우 각 수요처의 장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4조 (기타)

본 계약서(별첨서류 포함)는 2통을 작성하여 수요처와 주관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 년 12 월 9 일

(수요처명)㈜원익아이피에스(대표자)변 정 우(주관기관명)㈜인투코어테크놀로지 (대표자)엄 세 훈

